

**길이·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** (제114조제1항 관련)

항 목	특례기준	대상차종
길 이	19미터 이내	가. 폴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.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.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. 굴절버스
너 비	2.75미터 이내	가.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,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레일러 나. 저상트레일러 다. 보도용 자동차(TV중계차 등) 라. 환경측정용 자동차 마. 2층대형승합자동차
최대안전경사각도	30도	가.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.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다. 삭제 <2010.3.29>
최소회전반경	15.5미터 이내	가. 보도용 자동차(TV중계차 등) 나.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
완충장치	설치 예외	가. 노면청소작업차 나.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
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, 환기장치	설치 예외	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

주)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폴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( $R_c$ )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2.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.

※ 계산식

$$B = \sqrt{(\sqrt{R_c^2 - (a + U_f)^2 + \frac{b}{2}})^2 + (a + U_f)^2 + \frac{b_2}{2}} - \sqrt{R_c^2 - (a + U_f)^2 - a_2^2 + a_s^2}$$

- $B$  : 자동차의 주행폭원
- $R_c$  : 차로중심선의 반경
- $a$  : 견인차의 축간거리
- $a_2$  : 피견인차의 축간거리
- $a_s$  : 연결핀에서 견인차의 뒤축까지의 거리
- $U_f$  : 앞내민길이
- $b$  : 견인차의 폭
- $b_2$  : 피견인차의 폭